

인천지방법원 2017. 7. 5 선고 2015가단245625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]

재판경과

인천지방법원 2018. 4. 5 선고 2017나60928 판결

인천지방법원 2017. 7. 5 선고 2015가단245625 판결

전문

원고A

피고B

변론종결 2017. 6. 28.

판결 선고 2017. 7. 5.

주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
가. 전남 무안군 C 임야 661㎡ 지상 시멘트벽돌조 스라브지붕 단층 단독주택 80.4㎡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ㄱ, ㄴ, ㄷ, ㄹ, ㄺ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가)부분 24㎡를 철거하고, 위 토지를 인도하라.

나. 307,003원과 이에 대한 2017. 3. 11.부터 2017. 7. 5.까지 연 5%,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에 의한 돈과 2017. 2. 1.부터 위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3,7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
3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 제1.의 가.항과 피고는 원고에게 308,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7. 3. 7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에 의한 돈과 2017. 2. 1.부터 별지 감정도 표시 ㄱ, ㄴ, ㄷ, ㄹ, ㄺ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가) 부분 24㎡에 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3,7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갑 제1, 2, 3호증, 을 제1호증의 각 기재, 감정인 D의 측량감정결과 및 감정인 E의 임료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. 9. 21. 전남 무안군 C 임야 661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, 피고는 2009. 7. 16. 전남 무안군 F 전 552㎡ 및 지상 시멘트벽돌조 스라브지붕 단층 단독주택 80.4㎡(이하 '이 사건 주택'이라 한다)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, 이 사건 주택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ㄱ, ㄴ, ㄷ, ㄹ, ㄺ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가) 부분 24㎡가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사실, 위 침범부분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 취득일인 2009. 7. 16.부터 2017. 1. 31.까지의 월차임 상당 부당이득액은 별지 임표 계산표 중 합계란의 307,003원이고, 그 이후의 월차임도 3,7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위 침범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, 위 침범부분의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, 2009. 7. 16.부터 2017. 1. 31.까지 월차임 상당 부당이득액인 307,003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2017. 3. 7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7. 3. 11.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

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. 7. 5.까지 민법이 정한 연 5%,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017. 2. 1.부터 위 침범부분에 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3,7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고, 원고가 최초 소장에서 청구한 부당이득액수와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임의경매로 매수한 점 등을 종합하여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이재욱

별지